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4,960,244	14,548,807
일반회계	474,332,452	14,229,974
특별회계	10,627,792	318,834
기타특별회계	10,627,792	318,834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22,484	12,675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30,000	3,90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32,401	972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3,343,994	100,320
주차장특별회계	6,698,913	200,96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268,188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※ 의존자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→군 기금→기 시비→시 특별교부세→특세
 특별조정교부금→특금